

###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 ◎ 농림수산식품부, 3월 1일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 1일  
~5월 31일까지 특별 방역기간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베트남·대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일~5월 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평소보다 한층 더 강화된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3월 1일자로 구제역에 대한 『관심단계 경보』를 발령하였다.

※「관심단계 경보」란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변 국가 발생 등 유입 위험 징후가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것으로 중앙부처·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과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하여 중국·베트남 등 발생국가(15개국)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반입여부를 집중 검색하고, 신발 소독과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폐기 등을 통해 유입경로를 철저히 차단키로 하고 공·항만에 현장 검역관 증원(평시 79명 → 95명)과 탐지견(22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 방역기간 중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로 정해 공동방제단(15천명)·예찰요원(3천명)을 동원하여 영세 축산농장(260천호)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실시하고 전국 모든 방역기관에 “구제역 상황실”과 질병신고 전용전화(☎1588-4060)를 운영하고, 시·군별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하는 등 초동 방역태세를 확립키로 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특히 축산농가)들은 특별 대책기간 중 구제역 발생국가의 여행이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불법 육류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

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농가 피해는 물론 국가간 동물·축산물의 교역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시 되는 전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15건)과 2002년도(16건)에 발생되어 4,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외국 발생동향 : 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51개국, 2007년 43개국 발생

###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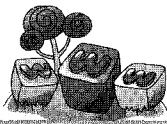
### ◎ 일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분 지역학적 분석결과 소개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Tsukamoto 박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소장 양창범)는 지난 3월 17일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의 Kenji Tsukamoto 박사를 모시고 일본 야생조류 유래 AI 바이러스의 분지역학적 분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3차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공통으로 겪은 바 있어 상호 연구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08년부터 “야생조류에서의 AI 예찰 및 공통 바이러스뱅크 구축”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 Tsukamoto 박사는 야생조류에서의 AI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겨울철새가 처음 도래하는 10월경에 AI 바이러스의 분리율이 가장 높아 이 시기의 집중적인 예찰 및 주의가 필요한 점, 유전자 분석결과 같은 혈청형의 바이러스라도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서로 달라 야생조류에는 보다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점, 일본 야생조류에서는 유라시안 계열의 AI 바이러스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아메리칸 계열의 바이러스도 12.4% 존재하여 대륙간 바이러스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의 주요 결론을 소개하였다.

한편, Tsukamoto 박사는 이번 2월말 일본 메추리 농가에서 발생된 H7N6형의 저병원성 AI에 대한 특성 및 방역조치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한·일 양국의 상호 연구협력을 강조하였다. 메추리 사육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일본 Aichi현 메추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닭 이외의 족종에 대한 예찰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예라 할 수 있다.

조류질병과장(권준헌)은 향후 “양국은 지속적인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방역활동에 보조를 맞추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청정화 유지 및 동북아 방역대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가금산업 발전대책 협의회 개최

축산과학원에서는 FTA에 대응하기 위한 가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

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월 1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최한 이 협의회에는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팀 등 기금분야를 담당하는 각 기관과 단체에서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의를 가졌으며 이번에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성될 가금산업발전대책위원회(T/F)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중장기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 김동진 부장은 계란의 유통구조개선, 지역별 계란집하장 설치 지원,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도입, 계분 자원화사업 지원 등을 제안하였으며 한국계육협회 김한웅 부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육계농가의 년 1억원 소득을 위해서 규모화와 이를 위한 축사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닭고기 가격결정구조를 생계가격 고시에서 도계육 고시제로 변경·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오리협회 조문규 사무국장은 낙후된 오리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축사 시설자금 지원, 오리 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 오리를 개량대상에 포함시키고 종오리 개량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중앙회 김삼수 팀장은 닭·오리고기 브랜드육 유통 활성화, 삼계탕 수출 지원 확대, 계란 유통시스템 개선 및 가공사업 활성화 등을 요청하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희철 연구관은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가변형 표준설계도 제작과 오리·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사의 환기시스템, 지열 에너지 이용 냉난방시스템 보급 지원과 폐사 가축 처리시설 지원 및 친환경축산농장 인증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 김영만사무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몇 번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실 있는 중장기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축산과학원 서옥석 가금과장은 “하림 등 관련 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주에도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말하고, 제때에 농식품부나 협회 등에서 필요로 하는 답을 내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다”라고 했다.

【문의:가금과 최희철 연구관 ☎041-580-6703】



### ◎방역본부,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강화

3월 12일부터 전국 60개 검역시행장 관리수의사 현물검사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오는 3월 12일부터 검역시행장의 민간 관리수의사의 소속을 전환하여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본부의 검역업무 수임은 지난해 5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물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에 따라 실시되며, 관리수의사 소속전환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08년 9월 11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방역본부는 관리수의사 특별채용 및 운용에 대하여 각계 여론 수렴과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관리수의사는 60명으로 경기 용인·광주, 부산 3개 검역사무소에 각각 배치되어 현물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역본부는 관리수의사의 변경된 업무수행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지난 3월 4일 용인문예회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업무수행 체계를 점검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및 관리수의사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검역시행장에서의 관리수의사 임무는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이동 ▲검사 시료의 채취 및 송부 ▲종업원 및 관계인 방역교육과 출입자 통제 등이다.

현물검사 신청절차는 검역시행장 관리인이 입고예정 통보서를 입고 전일 15시까지 검역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운송통보서·선하증권(B/L)·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현물검사를 신청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검사가 진행된다. 현물검사는 ▲컨테이너 개봉여부 및 오염여부 ▲온도기록부 검사 ▲컨테이너 개봉시 이상취·부패취 여부확인 ▲품목·수량 확인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다. 수입식용축산물의 검사는 수입물량의 1%를 대상으로 내·외부검사와 절단검사를 하며, 필요시 해동검사 및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축방역·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축산물의 정밀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검역원 관할지원에 송부하며, 문제축산물 발생 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방역본부는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현물검사를 통한 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검사공영화를 조기에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